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도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5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	2

I. 제안경위

2026년 4월 30일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65조).

Ⅲ. 검토의견

1. 수도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

개정안은 ① 일반수도사업자의 공급규정 및 인가관청의 변경명령 대상에 '수도물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하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이를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6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u>그 밖에</u>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 ----- ----- ----- ----- <u>수도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u>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u>

원공사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인가관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³⁾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규정⁴⁾에 따라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한편, 수도 관련 사고는 통상 단수와 같은 급수 중단 문제와 적수·유충·이물질 등의 수질 사고로 구분되는데, 단수는 청주시(2015년), 춘천시(2021년), 광주광역시(2023년·2025년), 서산시(2024년), 파주시(2025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질 사고는 인천광역시의 적수(2019년) 및 유충(2020년) 사고, 광주광역시의 이물질(2019년) 사고 등이 대표적임.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삭제 <2025.1.3.>
5.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6.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8. 삭제 <2025.1.3.>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규정」

제50조(요금감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요금 또는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삭제
2. 삭제
3. 특별재난지역 등 일시적인 경우로서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금액

이러한 수돗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생수 구매비, 정수기 및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수질검사비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됨.

특히 식당이나 카페 등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은 수돗물 공급 중단 및 오염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기회비용 등 막대한 피해를 겪게 됨.

그러나 현행 조례나 공급규정에는 주로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구체적인 배상 및 보상 기준이 미비하여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제안이유 참조).

일례로 지난 2025년 11월에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단수 사태의 경우, 사고 발생 후 무려 5개월이 경과한 2026년 4월에 이르러서야 생수 구입비에 대한 보상 협의가 타결⁵⁾되었으나, 2026년 6월 말 기준 그 외의 추가적인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공급규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심의할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수돗물 사고로

5) 국민일보, “파주시, 단수 피해 일괄 보상 매듭...영수증 없이 지급”, 2026. 4. 17.

6) 서울경제, “단수 피해 소상공인 공분 산 수자원공사...파주시 맞춤형 보상에 총력”, 2026. 4. 17.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이 입법되면 이러한 사후적인 소모적 분쟁과 협의 기간을 단축하여 피해구제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첫째, 공급규정에 배상 및 보상 사항을 의무화하려는 안 제38조제1항 및 제65조와 관련하여, ① 현행 「국가배상법」 제5조7)에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실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 제도를 활용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보험을 통하여 배상을 진행⁸⁾하고 있으며, ② 전기나 철도 등 다른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피해보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약관에 따른 요금 감면이나 환불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인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안 제38조제5항과 관련¹⁰⁾하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

7)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8) 참고 1. 수도권 관련 사고 손해배상 방법

9)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공급 중지하거나 사용 제한에 따른 요금 감면
(철도)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열차 지연, 운영중지에 따른 요금의 환불 또는 배상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0) 법제처는 안 제38조제5항과 관련하여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배상·보상의 '제도적 기준'인지, 수요자의 '개별 청구 사건'인지 불분명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까지 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고, ② 위원회 심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청 사건은 이미 「국가배상법」 제10조¹¹⁾에 따라 법무부 소속 배상심의회에서 총괄하여 심의하고 있고, ② 수도 사고는 현장의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이 필수적이며, 관련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보유하고 보상 재원을 직접 부담하는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수도사업자이므로 과거 인천·광주·춘천 등에서 자체 위원회를 통해 생수비, 필터 교체비, 소상공인 영업 손실 등을 보상했던 사례와 같이, 보상 책임이 있는 개별 수도사업자가 자체 위원회를 구성·운영¹²⁾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548

에 관한 기본적 사항(위원 정수·자격·선임방법, 임기, 정족수 등)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포괄위임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1) 「국가배상법」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12) 참고 2. 수도관련 사고 피해보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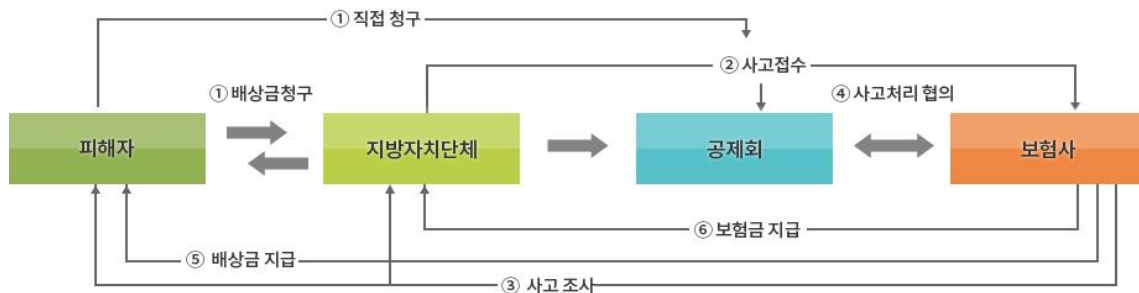
참고 1

수도관련 사고 손해배상 방법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영조물배상공제) 대부분의 특·광역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영조물배상공제(보통약관)」에 가입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영조물배상공제(보통약관)」와 함께 「영조물배상공제 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에도 가입
 - 수도시설: 영조물배상공제(보통약관)
 - 수돗물: 영조물배상공제(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영조물배상공제(보통약관) 청구 절차>



- (민간보험) K-water가 수탁 운영 중인 지자체(23개)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중 사고의 대인 또는 대물 배상책임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수돗물)로 인한 사고
 -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운영관리(시설운영 및 개량) 중 발생하는 사고

< 특·광역시 등 공제, 보험 등 가입현황>

구분	영조물 배상공제		민간보험	
	수도시설	수돗물	수도시설	수돗물
서울특별시	○	○	-	-
부산광역시	○	○	-	-
인천광역시	○	-	-	-
대구광역시	○	○	-	-
광주광역시	○	-	-	-
대전광역시	미응답	미응답	-	-
울산광역시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

참고 2

수도관련 사고 피해보상 사례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춘천시 등 수도관련 사고에 대하여 피해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를 보상한 사례가 있음
- 보상항목은 ①수도요금 감면, ②생수 구매비, ③정수기 필터 교체비, ④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⑤의료비, ⑥수질검사비, ⑦영업 보상(소상공인) 등

※ 인천, 광주, 춘천시의 경우,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수도물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기회비용(사용 손실*)을 포함하여 보상

* 수도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요금 감면, 생수 구매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등

< 수도관련 사고 피해보상 사례 >

구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춘천시
발생연도	2019	2020	2019	2021
사고내용	붉은 수도물	수돗물 유출	수돗물 이물질	단수 피해
보상대상	피해 지역주민	유출 발생가구	피해 지역주민	피해 지역주민
보상항목	1. 수도요금감면 2. 생수 구매비 3. 정수기 필터 교체비 4.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5. 의료비 6. 수질검사비 7. 영업 보상(소상공인)	1. 저수조 청소비 2. 필터 교체비 3. 수질검사비	1. 수도요금 절반 감면 2. 생수 구매비 3. 필터 교체비 4. 저수조 청소비 5. 의료비 6. 수질검사비 7. 영업 보상(소상공인)	1. 수도요금 감면 2. 생수 구매비 3. 정수기 필터 교체비 4.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5. 저수조 청소비 6. 수질검사비 7. 영업 보상(소상공인)
보상결정	피해보상심의위원회			
보상방법	피해자 신청(증빙첨부) → 심의 → 보상금 확정 및 지급	피해자 확정 → 신청(증빙첨부) → 심의 → 보상금 확정 및 지급	피해자 신청(증빙첨부) → 심의 → 보상금 확정 및 지급	피해자 신청(증빙첨부) → 심의 → 보상금 확정 및 지급